제3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[2024. 4. 30.(화) 10:00]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4. 4. 3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년 4월 30일 전문위원 장 석 현

#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4 - 54

나. 발 의 자: 박학용 의원 외 4명

다. 발의일자: 2024년 4월 24일

라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4일

# 2. 개정이유

관내 체육시설 이용시 부과하는 부속설비 이용료 항목을 축소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등 일부 행사의 부속설비 사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, 두자녀 이상 가정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,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감면 대상 중 3자녀 이상 요건 삭제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범위 확대(안 제10조제3항제6호)
- 나. 부속설비 사용료 항목 축소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사에 대한 전액 면제(안 별표 7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

나. 협조부서: 문화체육과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강서구 체육시설 일부 사용료에 대한 항목 축소 및 면제 규정을 두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, 다자녀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용료 부과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**안 제10조제1항**은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"부속설비 사용료"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해당 사용료는 **안 별표 7** 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 및 <u>부속설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 다만,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

○ **안 별표 7**에는 "부속설비 사용료"의 부과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2개의 항목으로 축소하였고, 비고에 제10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

- **안 제10조제3항제6호**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<sup>1)</sup>에 따라 다자녀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였음
- 본 개정안은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, 이를 통해 관내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<sup>1)</sup>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sup>1. &</sup>quot;다자녀가정"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
# 붙임

### 관계 법령

#### 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- 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## 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- 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
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- 다. 삭제 <2016. 8. 2.>
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- 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-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 업 또는 방과 후 활동
- 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- 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